

# 2003년 특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03년부터 특허제도가 달라진다.

이번에 개선되는 특허제도는 출원인들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 제출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한다. 최근 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기간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개월로 다르게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함으로써 출원인에게 10개월의 기한이득을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 실시를 실시한다. 기존에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종전에는 출원이 포기되거나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전(補填)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한 경우에는 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각종 중명서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중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편을 통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수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 주요국 특허정보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

특허제도 변경 내용	시행일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30개월로 통일	3월 11일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 실시	5월 11일
각종 증명서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발급	1월
전세계 주요 국가 특허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1월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 전 은행으로 확대	1월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제도 활성화	1월
특허심판기술설명회 및 심판관면담제도 활성화	1월

다. 기존에는 국내 출원인, 연구자 등이 국내 산업체재산권 정보(특허, 실용, 의장, 상표 등) 900만 건에 대하여만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정보초록(요약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특허출원수수료 납부 역시 인터넷뱅킹,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농협 등 일부 은행계좌를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만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인터넷뱅킹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특허권 침해 수입품 첫 제재조치

국내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 수입행위에 처음으로 제재 조치가 발동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에 수입·판매된 중국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 SK글로벌 등 수입·판매업체 3개사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사실을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또 업체별로 52만 원~8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무역위원회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국내 특허권자인 이온맥이 이를 3개사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문제가 된 두 제품은 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는 목적 및 효과가 같고 제품 구성에서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무역위원회의 설명이다.

## 캐논, 삼성전기와의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캐논이 레이저빔 프린터용 감광드럼과 관련한 삼성전기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캐논 소유의 특허권에 대한 삼성전기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삼성전기에 대해 특허권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금지와 과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논은 이번 판결이 제품개발, 제조 및 판매에 소요된 막대한 투자와 축적된 기술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무단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기 김명현 홍보그룹장은 “캐논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감광드럼은 현재 삼성전기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허청, 모든 업무 정보화로 매년 2,300억원 절감

최근 실시한 한국전산원의 성과측정 결과 특허청은 특허넷(KIPONet)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업무, 전체 과정을 100% 행정 정보화하여 대폭적인 비용절감 등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행정비용 절감액이 한 해 340억원, 민원비용 절감액 한 해 1,953억원, 심사처리기간 6.8개월, 24% 단축,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11.2% 절감에 이르는 것이다.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특허기술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어 방문비용 절감액 등 2001년

기준으로 한해 1,95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8톤 트럭 630대 분량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책자로 발간하던 특허공보 등을 인터넷으로 발간함에 따라 2001년의 경우 34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8,500만 건의 전세계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을 검색하여 심사함으로써 심사기간을 3년 사이 24%(6.8개월)이나 단축하였다.

또한 이를 비용/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1,902억원이 투입된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절감액을 제외하더라도 '98년부터 2001년까지 4,4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 ‘세라믹 나노파우더’ 특허출원 증가하다

특허청은 세라믹 나노파우더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99년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지만 2000년 2건, 2001년 5건, 2002년 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달 9일 발표했다.

세라믹 나노파우더는 IT산업에서는 휴대폰, 노트북 등 반도체 부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와 코팅제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출원은 총 14건으로 국내출원은 3건(21.4%), 외국출원은 11건(78.6%)이다. 국내출원은 2000년 이후 매년 1건씩 출원되고 있으며 외국출원은 98년 1건, 2001년 4건, 2002년 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내용은 대부분 세라믹 나노파우더를 원료로 해 전자부품, 나노튜브, 코팅제 등 열에 민감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는 외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세라믹 나노파우더를 사용한 국내 개발업체는 삼성전기, LG전자, 필코전자 등으로 연구개발단계 또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모아, 세라텍 등은 관련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와 사업검토가 진행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들은 “세라믹 나노파우더 과년기술은 차세대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원천기술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초미세 분쇄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독 ‘장미전쟁’ 국내업자 승리

장미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한국과 독일간 ‘장미전쟁’에서 국내 화훼업자들이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일의 세계적 장미 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수년간 계속되어 온 ‘한·독 장미전쟁’은 국내화훼업자의 승리로 사실상 종결됐으며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레드 산드라(Red Sandra)’는 코르데스사가 상표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 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국내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 장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인 97년 1월 ‘레드 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한 품종의 장미를 뜻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 3월 ‘레드 산드라’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재작년 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의 김주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소로 국내 장미시장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레드 산드라’ 재배,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